

改正法에서의 意匠의 要旨變更

趙 元 哲
(延世大 工大 教授)

目 次

- I. 머리말
- II. 意匠의 要旨範圍
- III. 意匠의 要旨를 變更하는 경우
- IV. 要旨 變更의 効果

〈이번號에 全載〉

壇

論

I. 머리말

1. 要旨變更의 意義

要旨變更이라 함은 意匠登錄出願書나 圖面의 중요한 部分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意匠法은 第18條 第1項에서 「意匠登錄出願人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의 要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條文내에서 檢定의 通知書가 송달되기 전까지 意匠登錄出願書의 記載事項 · 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記載事項을 보정할 수 있다」하였으므로 의장출원내용의 요지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2. 要旨變更을 금지하는 이유

要旨變更을 禁止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先出願主義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출원후 意匠登錄出願書의 内容을 추가 · 변경하는 경우에는 늦게 보정한 내용들도 당초 출원일자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그 사이에 늦게 출원한 사람에게는 要旨變更으로 인해 登錄을 받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있고, 또한 補正制度를 적용하는 폐단이 있으며 이로 인해 先出願者 선의의 第3者를 보호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要旨變更을 금지하는 이유이다.

II. 意匠의 要旨範圍

意匠登錄出願書의 要旨範圍는 意匠法 第43條의 登錄意匠의 保護範圍內이다.

즉, 동 규정에 의하면 「登錄意匠의 保護範圍는 의장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圖面과 圖面의 記載事項 · 寫真 · 模型 또는 見本에 표현된 의장에 의해 정하여 진다」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要旨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意匠의 要旨變更이냐의 여부는 意匠의 同一性을 해치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III. 特許 · 實用新案出願補正과의 對比

特許나 實用新案에서는 出願公告決定前에

特許請求範圍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要旨變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特48).

그러나 意匠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意匠의 내용을 형성하는 圖面·寫眞·模様·實物見本·의장을 표현할 物品名·意匠의 說明 등의 변경은 要旨變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特許法 第48條에 의하면 「出願公告決定 謄本의 送達前에 特許出願書에 최초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特許請求範圍를 增加·減少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하였으며 이는 第3者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特許內容은 特許出願書의 明細書 및 圖面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明細書나 圖面은 特許請求範圍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意匠의 圖面이나 說明書는 意匠內容自體이고 이것이 의장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이를 변경하면 의장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特許·實用新案과 같이 明細書·圖面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請求範圍內에서 청구범위를 증가·감소·변경한다고 하는 것을 채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意匠은 이런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特許法 第47條의 出願補正內容을 意匠法에서 준용되어 있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상기 特許法規定의 準用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特許法에 第50條 出願公告決定후에도 일정한 사항의 범위내 즉, 청구범위의 감축보정도 가능하나, 意匠에서는 出願公告制度가 없어 減縮補正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意匠에서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 特許制度에서 채용하고 있는 訂正許可審判制度·訂正許可無効審判制度가 존재하지 않는다.

意匠은 이런 特性에 입각하여 意匠의 圖面·寫眞·實物見本에 어떠한 내용을 증가·감소·변경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要旨變更되어 그

出願의 補正是 却下를 면치 못한다. 물론 상기 補正內容이 전부 要旨變更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보정내용이 意匠同一性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요지변경이 아니며, 반대로 意匠同一性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 변경은 요지변경으로 취급 받는다.

IV. 意匠의 要旨를 變更하는 경우

1. 意匠圖面 作成要領

意匠法施行令 第1條 第1項에 意匠登録出願書에 첨부된 圖面·寫眞·模型 또는 實物見本만으로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物品의 使用目的·使用方法·材質 또는 크기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에 관한 說明(1號), 物品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의장에 있어서 그 變化의 前·後에 걸친 物品이 形狀·模様·色彩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說明(2號), 출원서에 첨부된 圖面·寫眞 또는 模型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白色 또는 黑色 중의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그에 관한 說明(3號), 意匠을 표현할 物品의 全部 또는 一部가 두명한 경우에 그에 관한 説明(4號)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出願人은 의장출원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사항은 아니나 審查時 그 意匠의 内容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拒絕理由가 되기 때문에 완전성 있는 출원서와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意匠考案의 名稱

(1) 同一性範圍의 變更

意匠考案의 名稱은 의장이 표현된 物品의 名稱이라고 하며, 의장의 명칭은 意匠의 考案內容이 내재된 物品의 이름이다. 따라서 意匠考案의 名稱은 그 내용에 적합하고 용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名稱을 부착하여야 한다. 名稱을 잘못 부치거나 意匠內容과 상이한 명칭인 경우에 特許廳에서는 그 의장출원을 거절하게 된다.

그래서 意匠考案의 名稱을 변경하면 다른 의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補正이同一物品이 아니면 意匠의 同一性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要旨變更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同一物品이기 위해서는 物品의 機能과 用途가同一한 경우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변경하면 要旨變更이 아니다.

물론同一物品이외의 物品으로 변경해도 意匠의 同一性을 유지한다면 그 의장의 보정은 要旨變更이 아니다.

예를 들면 意匠考案의 名稱을 전자레인지를 전자레인지용 케비넬으로 변경하고 의장의 내용 즉, 圖面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意匠의 要旨變更이 아니다. 따라서 意匠을 표현한 圖面의 變更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意匠考案의 名稱만의 變更으로서 변경된 명칭이 意匠 物品區分內의 名稱이라면 요지변경이 아니다.

(2) 類似物品 · 非類似物品

意匠登録出願內容의 補正이 意匠同一性的範圍內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에는 要旨變更이다. 예를 들면 전차(차량용)를 완구로, 카메라용 손잡이를 자동차용 손잡이로, 개목걸이를 사람목걸이로, 권투글러브를 장갑 등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러한 名稱變更은 同一類別內의 變更(同一區分內)이 아니고 異種間의 變更이기 때문에 요지변경이다.

同一類別內의 變更의 예를 들면 승마용 무릎보호대를 축구용 무릎보호대로, 自動車用 백미러를 자전거용 백미러로, 손수레를 리아카로 보정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3) 商標名 등의 경우

商標名 · 組立式, 절첩식 등과 같이 實用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제거한 경우, 名稱에 機能 · 構造 · 作用效果 등 實用新案의 對象이 되는 名稱을 제거한 경우, 또 形狀 · 模樣 · 色彩 또는 이들의 결합 명칭을 제거한 경우, 材質名稱을 제거한 경우, 1조(1센트) · 유닛 등의 名稱을 제거하여 구체적이고 意匠의 名稱에 적합한 명칭으로의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니다.

(4) 外國文字 등의 補正

外國文字(Toy等)나 생략된 物品名(예: 10mm)을 우리말에 적합하게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5) 總括名 등의 補正

總括名稱이라 함은 物品名이 구체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된 名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시계 · 피복 · 通信器械器具 · 곡물 · 문방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계에는 회중시계 · 손목시계 · 벽시계 등이 있고, 被服에는 겉에 입는 紳士服 · 아동복과 속에 입는 와이셔츠 · 內服 · 팬티 등이 있고, 通信機械器具에는 電話器 · 라디오 수신기 등이 있는 바와 같이 意匠考案의 名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總括名稱 · 包括名稱을 합당한 구체적名으로 보정한 경우는 정당한 보정이다.

(6) 完成品과 部品

完成品(예: 자전거)과 部品(자전거의 핸들, 체인, 바퀴 등)은 다같이 意匠登録의 對象이되고 이들 物品은 형상 · 모양이 상이하여 非類似 物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非類似物品을 상호변경(예: 자전거를 자전거 바퀴로, 自動車를 자동차용 핸들로 보정하는 경우)하는 것은 요지변경이다. 그러나 이들을 상호변경한다 하더라도 변경된 名稱이 意匠圖面과 일치한다면 요지변경이 아니다. 즉, 圖面에 그려진 것은 자전거인데 名稱은 자전거용 핸들로 되어 있는 것을 자전거로 變更한 경우, TV 수신기와 TV 케비넬 같은 경우에는 意匠的 見地에서 본다면同一한 圖面이 되는 경우는 部品과 完成品間의 변경은 정당한 변경이다.

3. 意匠의 說明補正

意匠登録出願書上의 意匠의 說明欄에는 의장의 재질 · 用途 · 機能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차오로 상기사항의 내용을 보정하거나 변경 · 추가하는 경우에 要旨變更이 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意匠의 材質등의 變更

意匠圖面上의 意匠說明欄에 의장의 재질이나 用途를 별도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변경하여 기재하는 경우는 意匠의 要旨變更이 아니다.

또 意匠의 說明欄에 物品의 機能이나 동작 및 사용상태등의 설명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서 意匠圖面의 同一性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즉, 의장의 설명과 圖面에 圖示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의장의 요지변경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포장용 용기의 材質이 プラス틱으로서 투명하다는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도 요지변경이 될 수 없다.

(2) 意匠考案의 要旨欄의 補正

意匠考案의 要旨를 보정하는 경우는 사항에 따라 다르다.

즉, 최초의 출원서에 意匠考案의 要旨를 「物品의 形狀」만을 요지로 하였는데 후의 補正에 의해 模様을 추가한 경우는 요지변경이고, 또 考案의 要旨가 物品의 形狀 및 模樣의 結合에서 意匠의 模樣만을 요지로 한다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權利範圍의 縮小로서 요지변경이 아니다.

(3) 登錄請求範圍의 補正

意匠登錄出願書에는 반드시 意匠의 登錄請求範圍를 기재하기로 되어 있고 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도 意匠考案의 要旨를 기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양 概念 중 意匠考案의 要旨가 上位概念인가 그렇지 않으면 등록청구범위가 上位concept인가에 대하여는 異論이 있다.

일반 實務上으로는 意匠考案의 要旨가 등록청구보다는 더 上位concept으로 취급되어 그 등록의장이나 출원 중인 意匠의 考案의 要旨는 「意匠考案의 要旨」欄에 기재된 내용이며, 이를 기준으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意匠考案의 要旨欄을 기재하기로 한 것은 行政의 便宜와 要旨의 判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므로 登錄請求範圍가 그 고안의 요지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意匠의 同一類似與否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면 登錄請求範圍의 記載는 통상 意匠考案의 要旨를 감안한 物品의 形狀 · 模樣(색채가 있으면 색채까지 포함)의 結合으로 기재하는데, 청구범위 중에 模樣이 없던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또는 形狀이나 模樣 중 어느 하나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要旨變更으로 보

지 아니한다.

특히 登錄請求範圍에 없는 사항을 즉, 형상이나 모양 · 색채 등 어느 하나를 추가한 경우에도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圖面에 처음부터 있는 사항을 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內容의 變更이 없기 때문이다. 또 特許法 第48條에 「出願公告決定謄本의 送達前에 特許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特許請求範圍를 증가 ·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要旨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 바와 같이 이 규정내용을 意匠에도 유추해석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4. 圖面의 補正

意匠에서 圖面의 役割은 特許나 實用新案에 비해 크며, 意匠의 審查는 도면만을 가지고 한다.

(1) 要旨變更으로 되는 경우

① 物品의 形狀에 새로운 模樣을 추가하거나 도시된 模樣을 변경할 경우, 物品의 形狀을 변경 · 추가 · 감소시켜 意匠의 同一性을 잃은 경우, 物品의 形狀 · 模樣에 색채를 채색하거나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도 要旨變更으로 된다.

② 六面圖가 상호 불일치한 것을 일치시킴으로서 최초의 도면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意匠과 전혀 다른 의장으로 된 경우는 要旨變更이며, 그러나 크기정도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정도는 예외이다.

③ 圖面 중 1면이 부족한 경우도 요지변경이다. 예를 들면 6면도 중 좌 · 우측면이 빠진 것을 보충시킨 경우는 요지변경이며, 단 斷面圖를 추가하거나 변형시킨 것은 예외이다.

(2) 要旨變更으로 되지 않는 경우

① 圖面 中의 指示線 기타 意匠을 구성하지 않는 線을 제거하는 경우, 圖面의 縮尺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킨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② 圖面을 寫眞이나 見本 · 模型으로 보정한 경우, 또는 寫眞 · 模型 및 見本으로 제출한 것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보정한 경우는 圖面을 그대로 실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要旨變更이 아니다.

③ 立體的인 意匠이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6面圖의 一部圖面을 사진으로 보정한 경우에도 意匠의同一性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요지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圖面은 寫眞과 같이 物件 그대로(材質感等)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圖面과 寫眞·見本의 差異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면을 寫眞으로 보정함으로써 色彩나 模型이 추가된 경우에는 要旨變更이다.

④ 圖面·寫眞·見本 등이 불선명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선명하게 하는 보정은 최초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요지변경이 아니다.

鮮明한 寫眞인데 背景 陰影 등 필요하지 않는 것이 촬영되어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보정은 要旨變更이 될 수 없다.

⑤ 斷面圖·擴大圖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의장의 내용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나 이러한 圖面 없이 意匠의 說明欄에 설명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斷圖面·擴大圖는 意匠의 六面圖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參考圖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⑥ 圖面에는 形狀만이 도시되어 있고 의장의 설명란에는 色彩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圖面下端의 說明欄에 평면도는 빨강색이고 좌측면은 청색이라고 기재한 경우, 正面의 右側은 빨강색, 左側은 청색인 경우, 손잡이는 빨강색이고 本體는 청색이라고 한 경우, 몸체는 투명이고 뚜껑은 빨강색으로 기재한 경우 등의 경우에 의장의 설명란을 삭제하고 상기 색채들을 도면에 채색하여 보정한 경우도 要旨變更으로 보지 아니한다.

물론 상기 색들 중에는 진한색, 짙은 색 등이 있으나 통상적인 색인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너무 상식밖의 색인 경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⑦ 動的 意匠은 동작하는 자태가 바뀌게 되므로 意匠의 說明이 필요하고, 자태모양의 圖面이 필요하다.

動的 意匠에 있어서 뛰는 동작과 열리는 동작을 설명하는 것만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

여 圖面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움직이는 자태의 圖面이 없을 때에 그것을 보충하는 경우와 움직이는 자태의 도면이 처음부터 첨부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변경하는 경우, 한번 제출한 후에 다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떠한가?(高田充, 意匠 486면)

⑧ 움직이는 자태의 圖面이 없어 그것을 보충하는 경우는 補充의 幅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이미 제출된 도면과 비교하여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자태가 通常의 知識을 가진 자가 판단 해서 전체적으로同一性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補充은 要旨변경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탄 자전거완구에 있어서 제출된 圖面은 사람이 탄 자전거가 정지된 상태를 도시한 것만이고, 후에 태엽을 감아 바닥에 놓으니 펄최펄최 뛰어가는 모습이 특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뛰어가는 자태를 도시하여 補充한 경우, 또는 피아노 뚜껑을 닫은 상태의 圖面을 후에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의 도면을 보충한 경우이다. 이 피아노의 경우 뚜껑을 닫은 상태와 뚜껑을 열은 상태는 많은 差異點이 있으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피아노의 건반 등은 흔히 있는 形狀과 模樣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要旨變更이라 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고 건반 등 열은 상태가 새로운 사실이라면 要旨變更으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통상의 건반을 公知로서 權利로서 인정받을 수 없고, 새로운 건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權利의 一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⑨ 움직이는 자태의 圖面이 처음부터 첨부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변경하는 경우, 또 한번 제출한 후에 다시 변경하는 경우는 한번 첨부하여 출원된 도면을 변경하는 것은 意匠의同一性을 유지하면 요지변경이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요지변경이 된다.

⑩ 圖面 중의 文字를 제거하는 補正은 제거 상태 여하에 따라 다르겠으나 文字의 除去는 要旨變更이 아니다. 다만 文字를 除去한 자리가 4각, 3각 또는 기타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그 지워진 자리도 意匠의 權利範圍로 취급되어 要旨變更으로 된다.

⑨ 電線과 같이 긴 物品은 절단한 표시 또는 中間省略한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圖面을 후에 보정한 것은 要旨變更이 아니다.

⑩ 意匠은 正投象圖法에 의해 출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후에 이를 正投象圖法에 의한 도면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正投象圖法에 의하지 아니한 圖面으로부터 상기할 수 있는 의장과同一性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要旨變更이 아니다.

⑪ 透明한 意匠의 圖面은 이에 적합한 方式에 의거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후에 보정하여 적합한 도면으로 보정한 경우에도 意匠의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한 要旨變更이 아니다.

⑫ 形狀·模樣이 連續된 의장으로서 이 연속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보정하게 하는 경우의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속된 상태를 다시 추가하여 圖面이 변경된 경우에는 要旨變更으로 된다.

⑬ 本體와 뚜껑을 분리할 수 있는 物品을 결합한 대로 意匠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합할 도면과 分離된 도면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데 좌으로 이 중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은 처음의 圖面으로부터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要旨變更이 아니다.

⑭ 斷圖面·擴大圖·切斷圖 등의 표시를 추후의 보정에 의해 표시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⑮ 展開圖·使用狀態圖·參考圖·擴大圖·斜視圖 등을 추후에 보충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도면은 圖面 즉, 意匠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필요한 도면으로서 參考圖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V. 要旨變更의 効果

1. 補正却下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意匠登録出願書의 기재사항이나 첨부된 圖面·寫眞 및 實物見本 등을 要旨變更하는 보정은 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이를 한 경우에는 그 補正是却下된다.

따라서 審查官은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圖面 등에 관하여 한 보정이 圖面의 要旨를 변경한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特51, 1항) 하였으므로 審查官은 圖面 등의 補正이 요지변경인 경우에는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이것이 舊法과 改正法의 크나큰 차이이다. 舊法시에는 圖面 등의 補正이 요지변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法的根據가 없어서 이 변칙처리의 일환으로 「要旨變更이므로 채택할 수 없음」이라는 통지서를 出願人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이번 改正法에서 要旨變更의 補正에 관한 補正却下制度를 도입한 것이다.

2. 要旨變更된 補正書의 登錄

出願인이 한 보정이 최초의 意匠登録出願書의 記載事項·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記載事項의 要旨를 변경하는 것으로 意匠權의 設定登録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意匠登録出願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意匠登録出願한 것으로 본다.(意匠第18條第2項)

3.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不服抗告請求

特許廳으로부터 圖面등의 要旨變更을 이유로 補正却下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謄本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抗告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意72條, 169條第1項). 이 抗告審判請求는 要旨變更을 이유로 그 보정을 각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항고심판청구로서 拒絕査定에 대한不服抗告審判制度이다.

4. 類似意匠으로 出願

意匠登録出願書에 첨부된 圖面·寫眞 및 實物見本 등의 要旨變更을 이유로 補正書가 각하된 경우 그 要旨變更內容을 포함하여 原出願에 類似意匠으로 출원하면 된다.

5. 新規出願

出願人は 要旨變更을 이유로 補正却下決定을 받은 출원은 상기 방법 이외에 原出願을 취하고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新規性 및 先出願의 事實을 잊을 경우가 있으므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의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